

1999. 11. 12
제90회 임시회

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(전문위원 최재춘)

1.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

- 근거 :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- 절차 :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실시.

2. 협의 요청한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의 내용

- 협의요청일 : 1999년 11월 12일
- 협의요청 위원회
 - 의회운영위원회
 - 기획총무위원회
 - 사회도시위원회
-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
 - 감사의 목적
 - 소관부서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에 있음.
 - 감사시기 :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(7일간)
 - 감사대상기관 : 18개 기관
 - 의회운영위원회 : 1개 기관
 - 기획총무위원회 : 8개 기관
 - 사회도시위원회 : 9개 기관
 - 감사위원회 편성 :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함.
 - 감사 세부일정 : 각 상임위별 세부일정(별첨계획서 참조)
 - 감사대상사무 :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 - 감사방법
 -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, 질의답변, 자료 제출요구, 필요시 현장확인
 - 주요 감사사항
 - 1999년도 예산집행사항
 -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
 - 감사원, 중앙부처 및 자체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
 - 2000년도 예산안 개요 및 주요 투자사항
 -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- 감사진행 순서
 - 감사선언(위원장)
 - 감사위원장 인사
 - 현황보고 청취(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, 현황보고)
 - 질문 및 답변
 - 감사결과 강평
 - 감사종료 선언

3. 기타 사항

-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4. 검토의견

첫째,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사무의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.

-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면 양 상임위원회의 총 감사대상은 17개 부서이며,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서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이라는 감사기간을 감안해 본다면, 모든 대상기관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.
-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조직 및 임무 등을 고려하여, 중요도가 높은 집단민원 발생사무, 현안 사항이 있는 사무,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, 주민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무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

둘째,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.

-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감사의 경우는 년중 수차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가 행하는 업무현황보고와 중복되는 사례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가급적 평소의 업무현황파악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현장확인

감사의 성격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운용 되었으면 합니다.

-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능과 집행부의 정책집행상의 위법, 부당 사항을 조사, 적발하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

따라서 사전 철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으로 주요 핵심부분을 적시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